

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1.(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4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조운희)

가. 제안사유

- '58년부터 대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02년부터 산림청에 반환하여 입목대금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을 임업 시험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사유임야를 매입하고,
-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산림의 휴양 문화공간 조성하고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신축하며,

- 제천시에서 하수처리장(하수관로) 부지와 농촌마을권역 다목적습터로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인 도유재산을 제천시에 매각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임야 매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9 등 14필지
- 취득시기 : 2015. 10. ~ 2015. 12.
- 매입규모 : 808,513m² (80ha)
- 사 업 비 : 1,317백만원(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 대상지 입지여건 : 도유림 연결토지 및 경제림 조성·집단화 가능 임야 등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0번지(미동산수목원 내)
- 사업시기 : 2015년 ~ 2017년(1년 설계, 2년 조성)
- 신축규모 : 연면적 1,000m²(지상2층)
- 사 업 비 : 30억원(국비 50%, 도비 50%)
 - 설계비 180백만원, 시설비 2,820백만원
- 신축사유 :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교육과 주민밀착형 산림서비스 제공

□ 재산의 처분

《도유지 일반재산 처분》

- 위 치 : 제천시 천남동 471-17 등 5필지
- 처분시기 : 2015. 10. ~ 2015. 12.
- 처분규모 : 토지 13,553㎡(5필지)
- 재산가액 : 2억원 *공시지가 기준
- 처분사유 : 제천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요청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부지와 농촌마을권역 다목적쉼터로 활용을 위해 실 수요자인 제천시에 매각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58년부터 대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2002년부터 산림청에 반환하여 입목대금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으로 임업 시험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사유임야를 매입하고,
-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산림의 휴양 문화공간 조성하고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 제천시에서 하수처리장(하수관로) 부지와 농촌마을권역 다목적쉼터로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인 도유재산을 제천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비용 180백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808,513	1,316,291				
	건물	1건	1,000	3,000,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9 등 14필지	808,513	1,316,291	2015	임업시험연구 목적	개인	
	건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0번지 (미동산수목원 내)	1,000	3,000,000	2015 ~2017	산림교육센터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13,553	199,053				
	건물							
	기타							
1	토지	제천시 천남동 471-17 등 5필지	13,553	199,053	2015. 12	하수처리장 및 다목적댐터	제천시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p>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